自由化接近模型과 韓國의 開放政策

金 重 雄

▷ 目 次 ◁

Ⅰ. 序 論
Ⅱ. 自由化의 本質
Ⅲ. 主要國의 自由化와 自由化模型
Ⅳ. 韓國의 對外去來自由化政策

Ⅰ. 序 論

自由主義 國際經濟下에서는 各國의 經濟가 相互依存性과 補完性의 關係에서 相互間에 影響을 주고 받으며 發展한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自由化라고 할 때는 一國經濟의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을 뜻하고 貿易障壁등으로 人爲的인 制限과 統制를 加하기 보다 各國間의 對外去來에 關한 經濟活動의 自由保障을 前提로 한다. 다만 個別國家의 自由化 展開에는 當該國家의 固有한 政治·社會的 與件과 經濟構造 및 發展段階 때문에 自由化戰略 및 內容이 相異하고 段階的인 自由化 順序와 限界가 있다.

世界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위해서 對外去來自由化가 必要하다는 主張은 比較優位論에 理論的 基礎를 두고 있으나 具體的인 自由化 要請은 1930年代에 先進各國이 自國通貨의 平價切下와 輸入制限 等의 自由化制限措置를 競爭的으로 取함으로써, 도리어 國際貿易이 激減되고 世界經濟의 大恐慌을 招來하게 되자 이러한 經濟惡循環을 斷切하기 위해서는 自由로운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과 國際的인 協助가 必要하다는 自覺에서 緣由된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協力精神이 1945年에 IMF를, 1947年에 GATT를 發足케 했고 이들 國際機構를 通한 貿易 및 外換自由化를 基盤으로 1961年에는 OECD를 設立케 함으로써 國際間 資本移動의 自由化까지 推進하게 되어 60年代의 世界經濟의 高度成長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60年代末 以後 美國등 先進國의 慢性的인 國際收支 赤字의 累積으로 因한 國際收支 防禦政策과 石油波動으로 世界不況이 深化되면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이 論考는 近刊 豫定인 筆者의『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를 一部 要約한 것이다. 詳細한 것은 同報告書를 參照할 것.

서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輸入規制를 强化하는 등 新保護貿易主義[1]가 대두되고 있어 傳統的 意味의 自由化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 特히 自由化問題를 活發히 論議하고 있는 것은 우리 經濟에 內在하는 當面問題와 關聯하여 第5共和國 出帆 以後 政府의 基本政策으로 追求해온 開放政策을 對外去來의 經濟的 側面에서 支援하고자 하는 政策意志와 轉換期[2]를 맞은 우리 經濟의 運用을 自由로운 市場機能에 맡겨 經濟效率을 높이고자 하는 自律化 내지 自由化 思想을 背景으로 第5次 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 必要한 不足財源의 海外調達窓口와 手段을 多樣化하고 80年代後半에는 500億弗을 넘는 輸出規模 擴大 展望에 따라 國際的인 自由化 壓力이 한층 强化될 것에 對備하며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우리 經濟의 경우에도 對外去來의 自由化推進이 必要하다는 認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自由化를 推進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自由化를 推進해야 한다는 積極說[3]과 自由化 前提條件이 成熟한 後에 愼重히 추진해야 한다는 愼重論으로 갈리고 있을 뿐이지 그 內容 時期 등 自由化 實施方案에 關해서는 經濟發展段階와 自由化 前提條件의 成熟에 따른 對外去來 全般에 대한 具體的이고 綜合的인 政策提示가 未洽하다.

1) 開發途上國그룹은 新國際秩序를 要求하여 先進國들의 關稅, 非關稅障壁 철폐를 主張함.
2) 一般的으로 轉換期라 함은 一國經濟의 對外·對內均衡, 특히 國際收支 黑字基調가 定着化되는 時期를 뜻하나, 여기서는 우리의 經濟運用을 民間主導와 自律的인 市場機能에 맡겨 經濟效率을 높이려는 經濟運用基調 轉換期를 意味하는 뜻으로 使用함.
3) 嚴永錫, 「資本自由化의 問題點」, 韓國經濟新聞, 1981. 2. 11.

이에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對外去來自由化의 階階的 實施方案을 檢討하고자 먼저 自由化의 基礎理論을 살펴보고,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內容을 比較·檢討하여 여기서 抽出한 共通의 自由化 成功要件과 政策手段을 土臺로 4段階 自由化接近模型을 設定해서, 自由化計劃의 例示的 「시나리오」로서 段階別 自由化措置를 提示한 後 마지막으로 이 模型과 連繫하여 自由化戰略의 基本立場과 우리經濟의 現與件에 비추어 具體的인 段階別 實施方案과 補完措置를 例示하고자 한다.

Ⅱ. 自由化의 本質

1. 自由化의 意義

一般的으로 經濟體制의 自由化라 함은 財貨 및 用役과 資本의 移動에 있어서 國際間의 원활한 經濟去來를 沮害하는 여러가지 要素를 緩和하거나 撤廢하는 것으로서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을 뜻한다. 이를 經濟去來의 形態에 따라 나누어 보면 貿易去來의 自由化, 外換去來의 自由化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로 區分할 수 있으며 廣義로는 外換去來의 自由化를 資本自由化에 包含시켜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自由化 體制가 갖는 經濟的 意義는 國內經濟의 外延的 擴大의 結果로 國內外를 通해 個別的 保護 혹은 干涉이 없는 自由로운 狀況下에서 他經濟와의 交流를 보다 緊密히 하며 國家間의 比較優位産業에 대한 國際分業體制의 利點을 最大로 살려 國內産業 및 經濟體制를 高度化하고 體質改善을 通한 對外

競爭을 培養하는 등 效率的인 經濟體制로의 基盤을 굳히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內部經濟의 外部露出로 因하여 反對給付的 不利한 影響도 받게되기 때문에 自國利益 優先의 國際經濟秩序下에서 個別國家利益의 追求와 同時에 國際間의 經濟協力을 通하여 어떻게 世界經濟의 均衡된 發展을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自由化問題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다.

貿易自由化[4]는 本來 商品의 輸出入을 나타내는 좁은 意味의 貿易去來를 對象으로 하나 特히 輸入을 制限하는 關稅 및 各種 非關稅障壁 등의 여러가지 規制를 철폐하는 輸入自由化[5]를 指稱한다.

外換去來의 自由化에 關해서는 IMF協定第8條에 그 뜻이 잘 規定되어 있는데 보통 外換去來의 自由化라 함은 經常的 支拂에 대한 制限이나 差別的 通貨措置를 撤廢하여 經常的 外換去來를 自由化함으로써 貿易自由化를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資本自由化[6]란 直接投資나 間接投資를 不問하고 政府 혹은 民間部門에서 第3國에 대해서 資本을 自由롭게 供給하거나 또는 導入을 通해 同資本의 使用目的이나 方法등에 대하여 如何한 干涉도 받지 않음은 물론 더나아가 同資本에 대한 元金과 利潤의 償還 등 國家間에 資本의 移動이 自由로운 것을 意味하며 外資導入의 自由化와 海外投資의 自由化를 包含한다. 商品의 國際間 移動을 對象으로 하는 傳統的인 國際貿易理論에 있어서는 資本등 生產要素의 國際間 非移動性이 基本前提로 되어 있으나 古典的 假說은 OECD登場과 더불어 現實的으로 妥當性을 잃게 된다. 이는 直·間接投資를 莫論하고 資本의 高收益 指向性을 反映하여 自由로운 資本의 國際間 移動은 經濟的 效率性의 提高를 意味하는 것이다.

2. 自由化論議의 基礎理論

貿易이나 資本去來를 自由化함으로써 世界經濟가 自由化하기 以前보다 더 均衡된 發展을 할 수 있다는 理論은 많은 學者들이 展開하고 있는바 여기에 主要한 몇가지 基礎理論을 簡略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比較優位學說 世界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爲해서 自由化가 必要하다는 主張은 David Ricardo에 依해 主唱되고 J.S. Mill등에 의해 發展되어 온 比較優位의 原理에 그 理論的 基礎를 두고 있다. 各國은 歷史的·社會的·自然的 環境이 서로 다르고 賦存資源 및 技術發達의 程度등이 各各 相異하고 또 그 나라의 固有한 特性이 있는 까닭에 生產費가 낮은 財貨 즉 自國이 比較優位를 가지는 財貨를 生產하

4) 19世紀의 自由貿易은 輸入制限등 一切의 國家的 干涉을 排除하여 國際貿易을 自由롭고 無差別的으로 行해지도록 하는 것이나 2次大戰後 自由化는 OEEC의 自由化規約에서 始發하는 것으로 貿易에 대한 旣存制限철폐와 通貨의 交換性回復을 主張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기 때문에 古典的인 自由化와 差異가 있음.

5) 우리나라의 경우 輸入自由化문제 뿐만 아니라 對外去來自由化 추진을 爲해서는 우리의 輸出擴大에는 별로 큰 利益이 없으면서 수출경쟁국에게 抗議의 구실을 주는 恣意的인 政策조작이나 飢餓 輸出로부터의 輸出自由化도 緊要하다고 하겠음.

6) OECD의 自由化 規約은 「經常貿易外去來의 自由化에 關한 規約(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 「資本移動에 關한 自由化規約(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의 兩部分으로 構成되는 데 이는 OEEC의 自由化規約을 母體로 하여 承繼發展된 것으로 1961年 9月 採擇됨. OECD의 自由化 規約中 貿易外經常去來自由化規約은 그 機能面에서 IMF規定보다 具體的이고 拘束力이 强한 點이 相異하고 資本移動自由化規約은 OECD의 獨自的 領域이며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에 重要한 指標가 됨.
河合俊三, 『OECD의 話』, 日本經濟新聞社, 1976, pp. 152~183.

고 이를 特化하여 自由貿易을 通해 比較優位商品을 交換함으로써 資源利用의 效率性과 經濟的 厚生을 極大化시킬 수 있다는 主張이다[7].

一般特惠關稅制度 貿易自由化의 促進은 소망스러운 것이나 經濟發展段階가 다른 各國은 自國의 產業을 保護育成한다는 趣旨下에서 例外的으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後進國은 經濟構造의 後進性과 貿易構造의 脆弱性으로 인하여 先後進諸國間에 無差別的인 貿易自由化 내지 劃一的인 規制는 오히려 南北問題의 深化를 招來하게 되자 이의 解決을 爲해 先進國들은 1970年 9月 4次 UNCTAD特別委員會에서 開發途上國의 一般特惠關稅制度(The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s)를 認定하여 開途國으로부터 輸入을 增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開途國의 輸出이 증대되고, 그 結果 開途國國民의 所得이 늘어나면 結局은 開途國의 輸入도 增大되어 世界貿易은 伸張되고 世界各國이 均衡된 發展을 하게 된다는데 그 理論的 根據를 두고 있다[8].

資本自由化와 直接投資理論 資本自由化는 生產要素價格 決定에 있어서의 完全競爭理論의 利點을 背景으로 生產要素의 國際間 移動을 自由化하는 데 있으며 現實的으로는 直接投資의 形態로 具體化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에 대한 理論을 보면 海外投資는 그 動機와 類型이 다를 수 있겠지만 根本的으로는 國內에서 比較劣位에 있는 產業의 資本·技術 및 經營能力을 이를 必要로 하는 外國에 移轉시켜 相互補完關係를 갖게 함으로써 兩國間의 國際分業을 通한 貿易擴大는 물론 第3國에 대해서도 競爭力이 强化된다는 貿易指向 直接投資說[9], 生產要素의 不完全競爭狀態나 혹은 寡占的 要素를 强調하여 直接投資가 誘發되는 原因은 投資國企業의 獨占的 優位性이라는 不完全競爭「모델」에 依한 國際獨占論[10], 直接投資에 依하여 R&D要素의 相對的 賦存狀態의 優位性이 美國에 있다는 것을 前提로 美國의 技術開發과 美國企業의 海外進出性向間에 生產物週期와 같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보는 Vernon의 生產物週期說[11], 關稅地域이나 通貨地域의 경계선이 없다면 對外直接投資와 國內投資間의 差異가 없다고 보아 直接投資에 特有한 對外性要素(Foreignness)를 强調하는 Aliber의 對外性理論[12]등이 있다.

要컨대 先進諸國間에 추진되어 온 自由化는 相互間의 貿易擴大와 資本의 效率的인 配分에 依해 高度成長을 持續하는 데 貢獻을 하였으나 產業構造와 輸出競爭力의 脆弱性으로 對等한 立場에서 自由化를 추진할 수 없었던 開途國은 間接的으로 枝葉的인 自由化의 惠澤을 받

7) Heller, H. Robert, *International Trad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68, pp.45~53.
Fredrich, Klaus, *International Economics*, Mc Graw-Hill, Inc., 1974, pp.25~45.

8) 後進國의 경우 產業構造의 後進性과 貿易構造의 脆弱性 때문에, 開放經濟體制로의 移行은 本來先進國型經濟狀態에서만 可能함. 따라서 一般特惠關稅제도는 後進國을 爲한 先進國의 貿易自由化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Balassa Bela & Kreinin, Mordechai E.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Kennedy Round" *The Static Effec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7.

9) Reuber, Grant L,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73, pp. 73~76.

10) Kindle berger, C.P. (ed.), A Symposium,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60. 參照.

11)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12)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Kindleberger, 前揭書, pp.17~34 參照).

았을 뿐 先進諸國의 自由化成果에 比例하여 南北間의 格差가 더욱 擴大되어 온 것이 事實이었다. 따라서 對外去來自由化의 理論的 基礎는 基本的으로 比較優位說에 根據를 두고 진전되어 왔으나 여러가지 制約이 不可避하였고 資本自由化 特히 對外直接投資의 理論的 接近은 아직 確固하게 定立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開途國은 經濟成長에 必要한 外資와 技術導入이 必要하지만 過度한 外資導入은 自國企業의 育成과 發展을 沮害할 危險이 크기 때문에 經營合理化와 規模經濟로의 轉換을 通한 國際競爭力 强化에 政策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3. 自由化의 效果와 限界

먼저 貿易自由化의 效果를 보면 短期的으로는 生產要素의 追加雇傭이나 生產技術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假定할때 貿易自由化는 輸入絕對額의 增加 및 輸入商品 構成과 價格體系의 變化와 同時에 輸出增加 및 輸出商品構成의 變化 등 直接的인 變化를 招來하고 產業內部間의 專門化를 촉진한다[13]. 長期的으로는 市場擴大에 따른 規模의 經濟와 生產技術의 改善(Competition and Improvements in Production Methods)을 通하여 費用이 切減되는 效果가 나타난다. 한편 資本自由化의 核心인 直接投資의 效果를 보면 生產費의 低下와 生產量의 增大등 被投資國에 直接的으로 有利한 效果와 함께 被投資國의 勞動 및 資源이라고 하는 生產要素의 價格引上 效果를 通한 資源配分의 效果를 수반한다. 間接投資의 경우에도 證券投資나 商業「베이스」에 依한 貸出行爲를 通하여 投資가 이루어질 때에는 國際間의 金利隔差가 原因이 되어 發生하는 資本의 移動이기 때문에 企業 그 自體의 國際間 移動인 直接投資와는 그 性格이 다르다고는 하겠지만 資本過剩國으로부터 資本不足國으로의 資本移動이 일어남으로써 效率的인 資源配分이 된다는 點에서 經營資源의 配分을 隨伴하는 直接投資의 效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이 對外去來를 自由化하면 資源이 效率的으로 配分되고 交易이 擴大되는등 國際經濟 全體의 均衡的인 成長을 達成할 수 있겠지만, 理論과는 달리 現實的으로 自由化에는 一定 限界가 있다. 그 理由는 첫째, 比較優位의 特定 產業에만 各國이 特化해야 한다는 傳統理論에 立脚하면 產業構造를 現與件위에서 固着시키게 되어 固着化된 產業構造가 世界 需要構造의 長期的인 變化에도 잘 適應할 수 있는 最適의 構造라고는 할 수는 없으며 둘째, 傳統的 理論은 交易條件의 變動을 通한 交易量調節에 依하여 國際收支가 均衡된다고 하나 價格機能에 依한 完全한 國際收支 調整은 現實的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國際收支 不均衡에 따라 自由貿易이 制約을 받게 된다[14]. 세째, 開途國의 경우 脆弱한 產業構造와 낮은 技術水準에서 資本去來를 自由化하면 外國의 直接投資가 大量 들어와 產業秩序를

13) Balassa는 短期的 效果를 靜態的 效果라고 하며 輸出入擴大效果와 產業內部間의 專門化效果를 듬. Balassa는 各國의 個別 商品에 대한 輸入差額의 크기를 輸出入總額에 대한 比率로 計算하여, EEC會員國은 EEC形成以後 關稅引下에 따라 域內諸國의 產業部門에서 專門化가 促進된 것을 立證함. Bella Ballassa,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Objectives & Alternatives," McGraw-Hill Co., 1967, pp.66~92.

14) 韓國銀行, 「貿易自由化와 產業政策의 方向」, 『調査月報』, 1977.12, pp.6~7 參照.

攪亂시키고 企業의 競爭力을 弱化시킬 危險[15]이 常存하고 있기 때문에 後進國들은 外換 및 資本去來에 대한 自由化 推進에 消極的 態度를 取하게 된다.

Ⅲ. 主要國의 自由化와 自由化模型

1.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

自由化를 실현한 先進國中 自由化接近方法이 對照的인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過程을 간략히 살펴본 후 自由化의 成功要因과 先行條件을 찾아 보기로 한다.

가. 日本의 自由化

背景 日本은 1961年부터 1970年代 前半에 이르기까지 長期間에 걸쳐 段階的으로 自由化政策을 추진하여 輸入自由化는 1961年부터 1965年 사이에 關稅政策 등 치밀한 補完措置를 講究하면서 自由化를 一段落하였고 資本自由化는 1967年부터 1975年에 걸쳐 對內投資 및 對外投資別로 점진적으로 自由化를 추진하였다. 日本이 自由化를 추진하게된 원인은 美國이 國際收支 惡化를 이유로 自由化를 강력히 요구한 데서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根本的으로는 國際收支가 黑字로 轉換되는 등 經濟力이 向上되었고 經濟構造의 效率化 및 產業合理化 등 國際競爭力을 제고하는 自由化政策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 緣由한다.

經濟與件 當時 日本은 1955年부터 1961年까지 年平均 10%以上의 實質成長과 年平均 25%以上의 設備投資率을 示顯하였고 產業構造도 高度化(重化學工業化率 1965年 63.7%)되어 國際競爭力이 강화되는 등 高度成長을 지속하였다. 國際收支에 있어서도 1950年부터 1964年동안 經常收支의 小幅的인 黑字를 反復하다가 1965年 以後에는 大幅 黑字期로 轉換되었다.

日本의 自由化政策特徵 日本의 基本經濟政策이 對外指向的 高度成長政策의 추구였기 때문에 日本經濟의 開放化 내지 對外去來自由化推進은 必然的이었으며 비록 自由化始初에 先進國의 外部壓力이 크게 作用했지만 根本的으로는 國際收支黑字轉換 등 日本經濟力의 向上에 依한 自信感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爲해 추진되었다. 特히 國內外 經濟與件을 감안하여 철저한 補完對策을 併行 實施하여 長期的 受動的 그리고 段階的으로 愼重히 진행되어 成功한 點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나. 西獨의 自由化

背景 西獨은 1955年부터 1959年까지 比較的 短期間內에 對外去來의 自由化를 集中的으로 추진하여 貿易·外換·資本 등 對外去來全般에 걸쳐 실질적인 自由化를 실현하였다. 西獨의 對外去來自由化를 추진하게 한 요인은 歐州協力機構의 域內自由化 決定과 歐州支拂同盟의 結成을 契機로 自由化를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自由로운 市場機能에 依한 經濟

15) Kindleberger는 開途國에 대한 直接投資效果에 대해 Non-Zero-Sum-Game理論을 適用하여, 直接投資의 役割이나 效果에 否定的인 面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長期的으로 볼때는 대체로 與件變化에 따라 game의 主導權이 投資國으로 부터 被投資國側에 移轉되는 肯定的인 面을 强調함.
Kindleberger, C.P.,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Yale Univ. Press, 1969, p.150.

運用이라는 新自由主義理念을 배경으로 自由化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經濟與件 西獨은 1950年以後 經常收支黑字基調가 定着化되고 1956年 以後에는 黑字幅이 대폭 확대되어 外換保有高도 急增하게 되었다. 實質經濟成長도 年平均 10%의 높은 수준에 달성하여 自由化 推進期間中 物價安定下에 堅實한 高度成長을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西獨이 自由化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戰前의 蓄積된 資本과 技術을 바탕으로 해서 民間主導에 依한 市場經濟의 確立과 民間企業의 創意的 活動을 保障했기 때문이다.

特徵 西獨의 自由化政策의 特徵으로는

첫째, 新自由主義理念에 입각하여 自由化政策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點

둘째, 國際收支가 黑字化되기 前부터 輸入自由化가 시작되어 去來形態別로 外換·資本自由化가 順序대로 진행된 點

세째, 價格機能의 活性化를 通해 物價安定과 競爭促進을 달성케 한 對內自由化가 着實하게 先行된 點과 높은 國際競爭力을 들 수 있다.

다. 評價

日本의 對外去來自由化는 다른 先進國의 自由化壓力이 加해지는 가운데 國內外 先行與件이 成熟되었는가를 감안하여 政府의 적극적인

〔圖 1〕 自由化戰略 比較

	日 本	西 獨
自由化 接近方法	外部壓力下에 國內外經濟與件을 勘案하여 愼重하고 段階的인 長期的 自由化 推進(先條件充足 後自由化)	新自由主義 理念下에 市場經濟機能을 前提로 한 積極的 自由化 推進(先自由化 後條件 充足)
自由化時點	國際收支黑字轉換期	國際收支黑字轉換直前
主要自由化 措置年表	1958. 國際收支黑字轉換 1960. 貿易·外換自由化計劃 1962. Negative System 轉換 1964. 輸入自由化率 93% 1964. IMF 8條國 移行 1964. OECD 加入	1950. 貿易收支黑字轉換 1952. 數量制限措置 廢止 1956. 關稅引下 1957. 輸出所得에 대한 租稅減免廢止 1957. 輸入自由化率 93% 1958. IMF 8條國 移行
自由化 基本方針	ㅇ原資料確保에 優先 ㅇ新技術導入 積極 ㅇ重化學製品 輸出中心으로 轉換 ㅇ國內商品과 競爭이 작은 品目부터 自由化	ㅇ重化學製品 輸出中心 ㅇ原資材輸入 우선 自由化 ㅇ國產品과의 競爭이 작고 消費者에게 利益이 큰 品目부터 自由化
自由化 效果	ㅇ國際收支黑字 繼續 ㅇ日本企業의 國際競爭力 强化 ㅇ物價安定維持	ㅇ輸入自由化以後 國際收支黑字 累增 ㅇ輸人自由化가 經濟成長의 原動力이 됨
自由化 補完策	ㅇ치밀한 補完策 講究 ㅇ產業高度化를 위한 產業政策수립 ㅇ關稅「에스카레이션」과 消費財 重課를 위한 關稅政策 ㅇ農業改革을 위한 農業基本法 制定 ㅇ財源自立度를 提高하기 위한 貯蓄增大와 國民所得 培增計劃	

市場構造에의 介入下에 補完對策을 併行하면서 長期的인 觀點에서 受動的으로 그리고 段階的으로 진행된 반면에 西獨은 新自由主義理念下에 政府의 經濟活動介入을 最小化하여 市場經濟原理의 充實을 圖謀했고, 對外去來 自由化도 外部的壓力에 依해서가 아니라 能動的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物價安定과 經濟成長 및 對內外均衡을 同時에 達成하였다. 이와 같이 西獨이 적극적으로 自由化를 추진하여 對內外均衡을 同時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基本的으로 工業化 基盤下의 蓄積된 技術 및 資本, 높은 投資率, 낮은 賃金上昇率과 國內物價 安定으로 뒷받침되는 對外競爭力의 基礎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 兩國 自由化政策 推進過程에서 볼 수 있는 共通的인 事項은 高度成長이 지속되고 物價가 比較的 安定되어 自由化 當時 兩國産業의 국제경쟁력이 急速度로 제고되었고 무엇보다 國際收支가 好轉되어 自由化期間中 經常收支가 定着化된 點, 特히 西獨의 경우 自由市場經濟의 確立과 民間企業의 創意的 活動에 依한 效率的 資源配分 및 競爭促進과 이를 基盤으로 한 對外開放化·自由化의 擴散戰略이 自由化를 成功시킨 요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國家가 추진한 自由化過程을 경험삼아 우리도 自由化政策을 成功的으로 遂行하려면 다음과 같은 先進國經驗을 參考할 필요가 있다.

① 國際收支의 黑字를 前提로 한 自由化推進 : 國際收支惡化時에는 輸入附加稅, 「쿼타」制 등 輸入規制手段을 動員하는 것이 一般的이고 對外去來中 特히 資本自由化는 國際收支가 黑字로 轉換된 뒤에 그것도 貿易自由化, 外換自由化 및 金融의 國際化가 先行된 後 試圖되었다. 또 資本流入의 自由化가 促進된 後 資本流出의 自由化가 認定되는 과정을 밟았다.

② 補完措置의 併行 : 自由化의 推進과 同時에 産業合理化 및 輸出促進을 爲한 여러가지 支援措置를 取하는 등 補完措置가 併行된다.

③ 差別的 自由化 措置 : 交易相對國에 따라서 差別的인 自由化를 추진한다.

④ 價格機構에 依한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前提로 하는 對內自由化의 先行

⑤ 外換 및 資本自由化는 西獨(美國)등을 제외하고는 留保事項이 多數 常存한다.

2. 自由化與件

가. 先行要件

日本과 西獨의 自由化推進過程에서 抽出한 主要自由化 先行要素를 보면 自由化를 적극 展開하기 前에 이미 높은 經濟的 成長으로 經濟의 外延的 發展을 成就하였을 뿐만 아니라 對內均衡을 이루어 物價의 安定 등 經濟의 安定基盤도 어느 정도 確立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먼저 對外均衡을 이루어 國際收支黑字基調가 定着化되었고, 比較優位에 立脚한 産業構造도 高度化되어 國際的인 對外競爭에 充分히 對應할 수 있는 適應力을 具備하는 한편 對內的으로는 金利 및 換率의 價格機能活性化로 金融·外換市場이 발달되어 있고 政策運用基調도 市場經濟原理의 適用·擴大로 民間主導의 經濟體制로 轉換된다.

그리고 對外去來展開의 順序도 貿易自由化와 外換自由化가 先行하여 이루어지고 난 後,

資本自由化가 推進된다.

즉 ① 國際收支 黑字基調定着

② 높은 國際競爭力

· 產業構造高度化

· 生產性向上

· 企業體質改善

③ 對內的 自由化達成

· 金利 · 換率 등 價格機能活性化

· 金融機關의 國際化와 自律化

· 資本市場의 安定化

④ 貿易 · 外換 · 資本의 段階的 自由化 등

이 共通的인 先行條件이다.

〈表 1〉 對外均衡達成時期의 經濟指標

	日本	西獨	(韓國)
國民所得			
成長率(%)	9.3	9.7	6.4
GNP(億弗)	370.0	282.0	600.7
1人當GNP(弗)	398.0	595.0	1,597
貯蓄 · 投資			
總投資率(%)	30.4	22.9	35.4
國內貯蓄率(%)	30.6	23.8	26.6
海外貯蓄率(%)	−0.2	−0.9	7.6
產業 · 雇傭			
失業率(%)	1.3	9.3	3.8
工業化率(%)	27.2	39.7	32.6
重化學工業化率(%)	63.8	60.8	51.2
產業構造			
1次產業(%)	16.2	0.9	18.8
2次產業(%)	34.4	50.7	33.9
3次產業(%)	49.4	39.4	47.3
對外去來			
輸入自由化率(%)	42.0	77.0	74.7
貿易依存度(%)	19.4	22.9	56.3
輸出(億弗)	34	32	147
輸入(億弗)	31	34	191
貿易收支(百萬弗)	333	−197	−4.396
經常收支(百萬弗)	256	345	−4,151
外換保有高(百萬弗)	1,336	479	5,708
物價 · 賃金 · 金利			
都賣物價上昇率(%)	−1.5	8.7	18.8
消費者物價上昇率(%)	1.5	5.0	18.3
實質賃金上昇率(%)	4.8	11.3	8.6
通貨增加率(%)	17.2	12.1	24.6
金利再割引率(%)	6.94～7.30	4.50～6.00	14.5～15.0

註 : 日本은 1958～60年平均(단 輸入自由化는 60年)
西獨은 1950～52年平均(단 輸入自由化는 52年)
韓國은 1979年(단 輸入自由化는 81年)

資料 : KIEI, 經濟基調轉換期의 政策對應 附屬統計.
KIEI, 國際比較統計.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80.

나. 韓國의 自由化與件

우리의 現經濟發展段階와 經濟與件이 위에서 考察한 自由化先行條件을 어느 程度 充足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指標를 좀더 細分하여

① 國際收支防禦能力

② 經濟成長潛在力

③ 價格機能과 金融機關의 發展 및 自律化

④ 企業의 競爭力

⑤ 資本市場의 成熟등의 기준에서 分析하여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收支防禦能力을 綜合評價해 보면 經常收支黑字는 80年代末까지 그 實現이 不可能한 것으로 豫測·展望되고 對外經常支拂能力인 外換保有高水準도 通常適正水準으로 보는 25%에 未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保有高構成도 短期資金이 차지하는 比重이 늘어나고 있어 健全하지 못하다. 더우기 外債殘額이 累增되고 있어 元利金償還比率이 아직 낮은 水準에 있고 外形的인 貿易去來規模가 相當水準에 있기는 하나 外債殘額의 對GNP比重이 81年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全體的으로 볼때 國際收支防禦能力은 自由化를 적극 추진하기에는 不安하다고 하겠다.

둘째,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보면 經濟規模(GNP, 1人當 GNP 등), 產業構造(工業化率,

〈表 2〉 外債規模와 構造

(단위 : 億弗)

	73~79 年平均	74	75	80	81[1)]
經常收支	△14	△20	△19	△53	△54
(對GNP比重, %)	(4.4)	(11.0)	(9.4)	(9.2)	(8.2)
外換保有高	31	11	15	64	70
(對經常支出比重, %)	(24.1)	(13.8)	(19.3)	(22.9)	(20.6)
外債殘額	110	59	85	272	337
(對GNP比重, %)	(36.2)	(39.2)	(41.8)	(46.4)	(50.1)
元利金償換額	13	6	7	30	35
(對GNP比重, %)	(4.3)	(4.0)	(3.6)	(5.0)	(5.3)
(對經常支出比重, %)	(12.3)	(11.4)	(12.5)	(13.2)	(13.0)
短期負債/外債殘額(%)	21.3	19.1	25.6	27.3	28.2

註 : 1) 推定値.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80, 1981.

〈表 3〉 에너지 自立度 推移

(단위 : 百萬톤, 石油換算)

	1962	66	71	76	79
總에너지	10.4	13.1	21.3	29.8	40.9
輸入依存度(%)	9.4	16.8	51.2	61.6	71.8
輸入에너지物量 (石油, 原子力, 有煙炭)	1.0	2.2	10.9	18.4	29.4
에너지自立度(%)	90.6	83.2	48.8	38.4	28.2
國內에너지物量 (無煙炭, 水力等)	9.4	10.9	10.4	11.4	11.5

資料 : 動力資源部

重化學工業化率 등), 投資率은 外形的으로 一應 自由化推進當時의 先進國水準에 達하고 있다고 보겠다(表 1 參照). 다만 基礎資源 및 에너지 自立度가 아주 낮다는 點에서 우리의 經濟成長力에 문제가 있다.

세째, 對內自由化條件에 關해서는 먼저 金融機關의 發展과 自律化에 대해서 보면 우리의 金融產業이 先進國보다 훨씬 뒤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實物經濟發展에 비해서도 相對的으로 落後된 것이 事實이다[16].

이와 같이 金融產業의 發展이 落後된 根本的인 原因은 金融의 自律化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金利機能도 自律化되어 있지 않고 市場實勢金利와는 크게 乖離된 負의 實質金利를 維持하고 있으며 換率도 현재 流動換率制를 採擇하고 있기는 하나 換率의 年間變動幅을 政策的으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實效換率이 實勢를 反映하고 있지 못하는 등 伸縮性이 缺如되어 있는 實情이다. 다만 現在 政府가 金融機關의 民營化 추진을 通하여 金融機關의 自律化·國際化與件을 造成하고 있고 金利·換率의 價格機能도 自由化·活性化를 적극 推進하고 있는 等 對內自由化를 實現하려는 政府의 政策意志가 어느때보다 確固한 點에 비추어 볼 때 5次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는 對內自由化與件이 成熟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4〉 主要基礎原資材의 海外依存度(1978)

	單位	需 要	輸入量	海外依存度
原 油	千kℓ	26,301	26,301	100.0
原 線	千M/T	311	311	100.0
原 糖	千M/T	566	566	100.0
原 麥	千M/T	6,674	1,638	97.8
原 木	千m	10,850	9,248	85.6
原 毛	千M/T	21.6	21.6	100.0
占 鐵	千M/T	3,010	1,695	56.3
鐵 鑛 石	千M/T	4,211	3,622	86.0
生 고 무	千M/T	117	117	100.0
펄 프	千M/T	526	400	81.7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1978.

〈表 5〉 金融聯關比率의 國際比較

	1962	1965	1969	1973	1977	1978	1980
總通貨/GNP							
韓 國	0.15	0.12	0.33	0.38	0.35	0.36	0.36
日 本	0.69	0.80	0.77	0.87	0.85	0.87	0.86
西 獨	0.38	0.42	0.53	0.57	0.65	0.67	0.67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IMF, *IFS*, 1980.

〈表 6〉 銀行과 企業의 成長推移比較

(1970=100)

	1970	1973	1975	1977	1978
一般銀行總預金(A)	100	232	374	678	949
製造業賣出額(B)	100	266	589	1,074	1,466
10大業體賣出額(C)	100	268	827	1,728	—
A/B	1.00	0.87	0.63	0.63	0.65
A/C	1.00	0.86	0.45	0.39	—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經濟安定化施策政策資料』, 1981.

〈表 7〉 實質金利 國際比較

(단위 : %)

	韓國			日本	臺灣
	62~64	65~73	74~80	75~79	75~79
實質金利					
預 金	−8.6	+7.8	−4.3	+0.1	+4.7
貸 出	−9.5	+4.7	−3.1	+2.8	+5.9
通貨增加率	11.0	35.0	26.6	9.6	23.7
都賣物價上昇率	21.0	8.7	22.1	6.4	8.8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IMF, *IFS*, 1980, 1981.

16) 司空壹, 「金融과 經濟發展」, 『韓國開發硏究』, 1980. 9. pp.152~158. Raymond W. Gold Smith는 주로 金融資產殘額側面에서 FIR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金融資產이 多樣하지 못한 點에 비추어 여기서는 단순하게 GNP에 대한 總通貨比率을 보았다. Gold Smith, Raymond W., *The Determinents of Financial Structure*, OECD, 1966.

네째, 企業의 國際競爭力[17]을 企業의 財務構造 生產性面에서 檢討해 볼때 先進外國企業과 自由로운 競爭을 하기에는 그 基盤이 아주 脆弱하다. 즉 財務構造의 경우 他先進國에 비하여 自己資本비율이 낮은 反面 借入依存度는 높아 資本調達구조가 허약하고 特히 勞動生產性에 있어서 1單位 生產量을 生產하는데 드는 賃金費用이 日本이나 臺灣에 비해 아주 높아 價格競爭力이 弱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資本自由化의 必須的인 前提가 되는 資本市場의 成熟도 外形의 量的 成長은 國際水準(대략 世界 20位수준)에 까지 이르렀으나 證券人口의 規模(총人口의 2%)나 그 構成性格등(機關投資家와 小株主의 비중이 弱함) 資本市場安定化 要素面이라든가 資本市場의 價格機能등 質的 水準에서는 資本自由化에 앞

〈表 8〉 實質實効換率 推移

	1973	1975	1977	1978	1979	1980 2/4	1980 4/4
名目換率(₩/$)	399	484	484	484	484	597	657
弗當「인센티브」(원)	94	76	64	67	66	75	72
名目實効換率(₩/$)	492	560	548	551	550	672	729
相對價格(1975=100)	141	100	92	95	88	72	70
外國의 物價指數(1975=100)[1]	79	100	113	130	143	159	172
韓國의 都賣物價指數(1975=100)	56	100	122	137	162	223	246
實質實効換率(₩/$)	696	560	506	523	485	481	510

註 : 1) 外國의 物價指數는 주요 輸出對象國別로 都賣物價指數에다 弗貨로 표시된 換率指數를 곱한 다음 韓國의 輸出額 構成比率로 加重平均하여 계산함.

資料 : 韓國開發硏究院,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1, p.93.

〈表 9〉 勞動生產性 國際比較

		1975	1976	1977	1978	1979	年平均增加率 75~79
韓國	勞動生產性指數	100	107.5	118.2	132.9	153.9	11.4
	單位當賃金費指數	100	125.3	151.8	182.2	202.3	19.2
	實質投資(10億원 75年價格)	2,543	3,695	3,695	5,153	5,647	
	(伸張率(%))		(14.7)	(26.6)	(39.4)	(9.6)	(22.6)
日本	勞動生產性指數	100	112.3	118.0	127.4	142.8	9.3
	單位當賃金費指數	100	100.0	103.3	101.3	97.1	△0.7
	實質投資(億圓 70年價格)	306,429	316,341	332,799	366,181	398,261	
	(伸張率(%))		(3.2)	(5.2)	(10.0)	(8.8)	(6.8)
臺灣	勞動生產性指數	100	116.9	126.3	157.3	163.3	12.3
	單位當賃金費指數	100	100.5	107.3	100.0	114.6	3.4
	實質投資(百萬NT$ 76年價格)	193,329	195,724	203,385	229,084	253,786	
	(伸張率(%))		(1.2)	(3.9)	(12.6)	(10.8)	(7.1)

資料 : 韓國銀行, 『韓國統計年報』, 各國統計.

17) 企業의 國際競爭力은 價格競爭力과 非價格競爭力으로 區分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企業의 경쟁體質을 經營基盤에서 그것도 財務構造 및 生產性側面에서만 簡略히 보았다. 詳細한 것은 拙著, 「對外去來의 自由化와 韓國經濟」 參照.

서 補完하고 解決해야 할 點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80年代의 開放經濟指向下에 第2의 經濟跳躍을 試圖하려는 우리로서는 모든 先行經濟與件이 造成되고 成熟된 然後에 對外去來自由化를 推進할 것이냐 아니면 必要條件이 成熟되기 前이라도 自由化를 爲한 前提條件 準備나 制度補完을 併行하면서 自由化措置도 積極的으로 함께 實施하느냐 하는 것은 自由化戰略 選擇의 政策判斷의 問題라고 하겠다.

〈表 10〉 財務構造의 國際比較

(단위 : 總資産에 관한 構成比, %)

	韓國			日本	西獨	臺灣	美國
	1977	1978	1979	1978	1977	1975	1977
流動資産	51.6	50.3	50.4	62.9	60.1	44.8	47.0
現金·預金	8.3	7.8	6.1	14.6	9.4	5.5	4.2
賣出債權	11.9	11.7	12.5	24.7	25.3	11.9	16.3
固定資産	46.6	47.8	48.4	36.9	39.5	48.1	35.3
流動負債	45.9	45.8	49.3	55.2	32.1	41.2	24.0
買入債務	12.7	11.2	12.7	24.2	—	—	8.8
短期借入金	19.0	20.3	21.9	17.8	—	22.1	4.2
固定負債	31.9	32.8	29.7	25.3	15.0	14.6	22.9
長期借入金	28.0	27.7	25.8	19.3	—	11.6	17.4
自己資本	22.2	21.4	21.0	18.3	31.7	38.4	53.1
流動比率	112.4	109.8	102.2	113.9	187.4	108.7	195.6
固定比率	209.8	223.4	231.0	201.4	124.6	125.2	100.0
負債比率	350.7	366.8	377.1	446.4	215.1	160.3	88.5
借入金依存度	47.0	48.0	48.4	37.1	—	—	26.2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0.

〈表 11〉 資本市場의 外延成長推移

		1969	75	76	77	78	79	成長倍數 (69年對比)
上場會社數	個	42	189	274	323	356	355	8.5
株主數	名	54,318	290,678	568,105	395,275	963,049	872,075	16.1
上場株式數	千株	141,042	824,983	1,583,349	2,177,166	2,959,390	3,506,744	24.9
上場資本金	百萬원	119,902	643,215	1,153,325	1,492,375	1,313,505	2,202,262	18.4
時價總額	百萬원	86,569	916,054	1,436,074	2,350,835	2,892,512	2,609,414	30.1
株式 1日 平均 去來量	千株	335	1,056	1,986	4,310	4,671	5,382	16.1
株式 1日平均去來代金	百萬원	143	1,136	2,110	4,662	5,934	4,579	32.0
債券 1日 平均 去來量	百萬枚	1	57	147	461	839	1,887	1,887.0
債券 1日平均去來代金	百萬원	1	46	123	442	815	1,804	1,804.0
證券會社資本金	百萬원	1,300	28,000	33,148	46,326	51,250	54,600	19.4
企業資金調達	百萬원	6,099	156,255	262,226	362,452	653,062	841,432	138.0

資料 : 韓國證券去來所, 『證券統計年報』, 1979.
韓國投資信託, 『韓國投資信託月報』, 1980. 2.
韓國證券金融, 『證券金融』, 1980. 7.

〈表 12〉 韓國經濟長期展望

		1962	1966	1971	1976	1981	1986	1990
G N P	80年不變億弗	127	181	287	465	609	900	1,189
	經常億弗	23	37	91	274	658	1,501	2,539
1 人當 G N P	80年不變弗	478	614	873	1,297	1,572	2,170	2,686
	經常弗	87	125	278	765	1,700	3,624	5,736
人口	千 人	26,513	29,436	32,883	35,863	38,723	41,839	44,261
經濟活動人口	千 人	8,346	8,970	10,540	13,060	14,744	16,948	19,162
失業者數	千 人	684	637	474	510	707	680	653
失業率	%	8.2	7.1	4.5	3.9	4.8	4.0	3.9
GNP디플레이터上昇率	%	18.4	14.5	7.5	17.7	20.0	9.5	7.0
總投資率	%	9.6	18.8	28.1	27.6	32.0	32.4	35.6
國內貯蓄率	%	3.2	11.8	15.4	23.1	22.9	29.6	35.1
商品輸出	經常億弗	0.5	2.5	11.3	78.1	210	530	1,022
商品輸入	經常億弗	3.9	6.8	21.8	84.1	252	555	1,021
貿易收支	經常億弗	−3.4	−4.3	−10.5	−6.0	−42	−25	1
經常收支	經常億弗	−0.6	−1.0	−8.5	−3.1	−54	−3.6	−10
(對 G N P 比重)	%	(2.6)	(2.7)	(9.3)	(1.1)	(8.2)	(2.4)	(0.8)
外換保有高	經常億弗	1.7	2.4	5.7	29.6	70.0	110	
(對經常收支比重)	%	(36.7)	(30.3)	(20.3)	(23.0)	(20.3)	(15.2)	

資料：經濟企劃院，韓國開發硏究院.

3. 自由化 接近模型

自由化를 成功的으로 推進한 日本, 西獨의 先進國事例에서 抽出한 共通의 成功要件과 自由化 政策手段을 土臺로 自由化 接近模型[18]을 設定하여 自由化計劃의 例示的인 「시나리오」로서 段階別 自由化戰略을 提示해본 後 이 模型과 關聯하여 우리經濟의 現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自由化措置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다만 開放經濟體制에서는 모든 經濟活動의 最終結果가 國際收支結果로 綜合表示되고 自由資本主義國家에서는 開放化 推進의 成敗가 對外條件 못지 않게 市場經濟活性化 즉 對內自由化 達成程度에 크게 依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國際收支와 對內自由化의 두가지 條件을 基準으로 自由化體制準備期, 自由化實現期, 自由化活着期, 自由化 完成期의 4段階模型으로 區分한다.

가. 自由化體制 準備段階

經濟의 自由化를 推進하는 第1段階에서는 自由化를 積極추진하기에 앞서 外部經濟의 急激한 衝擊을 防止하기 爲하여 經濟의 自由化를 試驗的으로 추진해 보는 段階로서 비록 經常收支가 黑字로 轉換되지 않더라도 年次的으로 經常收支의 赤字幅이 減少趨勢에 있고(赤字幅도 經常GNP의 10%未滿) 外債償還負擔率도 20%未滿이어야 하는 등 소위 成熟債務國(mature debtor nation)[19]으로서의 發展可能

18) 여기의 自由化模型은 自由化戰略에 있어서 經濟與件을 勘案하여 段階的으로 自由化를 추진하되 同時에 先行條件造成과 補完措置를 併行하여 實施한다는 折衷的 立場을 前提로 設定하였음.

19) Samuelson은 一國의 經濟成長過程을 外資導入으로 因한 國際收支와의 關係로 未熟成長債務國段階, 成熟債務國段階, 新債權國段階, 成熟債權國의 4段階로 區分함. Paul A. Samuelson, *Economics*, 10th ed. Mc Graw-Hill Book ot. 1976, pp.660~661.

〔圖 2〕 自由化 接近模型

自由化模型(段階)	自 由 化 條 件	自 由 化 戰 略
第1段階 自由化體制準備期 —試驗的 推進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赤字幅 長期的 減小趨勢 또는 經常收支 黑字轉換의 過渡期 ·赤字幅 GNP의 10% 未滿 ·外債償還負擔率 20%未滿 ·外換保有高 經常去來 支出의 20%以上 —·未成熟成長債務國에서 成熟債務國으로의 轉換段階 ㅇ對內 自由化 條件 —·價格機能 活性化 基盤造成 ·金利機能 彈力化 ·國內外 金利差 長期的 縮小方向 ·換率機能의 伸縮性賦與(또는 換率의 流動化) —·金融產業育成 ·實物經濟發展과 併行하여 金融機關發展 및 自律化 促進 ·海外貯蓄 依存 減小 —·工業構造 高度化 推進	—·關稅保護下 自由化品目의 選別的 擴大 —·貿易外 支給의 部分的 自由化와 外換集中制의 漸次的 緩和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本調達 —·監視品目(準自動品目) 設定 —·資本市場 國際化를 위한 受容態勢 整備 ·證券會社의 大型化·國際化 推進 ·企業公示制度의 整備·確立 ·證券人口의 底邊擴大로 證市安定化基盤 確立 —·國際投資信託의 許容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이나 Country Fund등의 間接方法을 通해 證市開放 —·外國人의 直接投資規制 緩和 —·長期自由化計劃 樹立 發表
第2段階 自由化 實現期 —試驗的 推進範圍 擴大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 黑字轉換 또는 赤字幅 GNP의 5%未滿 ·外債償還負擔率 15%未滿 ·外債殘額의 對GNP比重 50%以下 ·外換保有高 經常去來支出의 15% 以上 —·成熟債務國段階 —·對內·對外 均衡化 接近 ㅇ對內自由化條件 —·價格機能 ·金利 國際水準 接近 ·換率機能 活性化 ·公正去來 保障 制度化 —·第2金融市場 發達 ·金融市場의 專門化·分業化 —·比較優位產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技術投資 大幅 擴大	—·AA品目의 選別的 擴大 및 輸入限度制 廢止 ·輸入自由化率 90%以上 達成 —·技術導入 大幅 開放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積極 誘致하기 위한 外換管理法·外資導入法 등 關係法規 整備 —·國內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投資 部分的 許容 —·GATT協定 第11條, IMF協定 第8條 및 OECD 自由化規約을 受諾할 수 있는 基盤構築 —·保護 및 育成產業을 除外한 大部分의 制限品目을 監視品目(準自動品目)으로 轉換
第3段階 自由化 活着期 —自由化實現定着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 黑字基調 定着 —·對內·對外 均衡 達成 —·新債權國段階 ㅇ對內自由化條件 —·政策運用上 民間主導에 依한 市場競爭原理 適用 擴大	—·關稅의 漸進的 引下, 輸出支援 縮小 ·短期輸出支援金融 廢止 ·延拂輸出中心의 輸出金融支援 —·外換集中制의 大幅 緩和 ·外國換 需給計劃 廢止 ·先物換去來의 擴大 —·國內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 投資範圍

〔圖 2〕의 계속

	—・價格機能自律化 및 公正去來 定着 —・金融產業國際化 ・金融機關 大型化・國際化 達成 ・資本市場 大型化・國際化 達成 —・重化學工業 등 工業構造 高度化 ・比較優位 競爭力 確保	擴大 —・國內證券의 海外發行 —・資源開發型 海外投資 및 金融機關의 外國證券投資 擴大 —・IMF 第8條國, OECD 加入
第4段階 自由化 完成期 —高度開放化・國際化段階	ㅇ國際收支條件 —・經常收支 黑字幅 累增 —・海外部門에서 惹起되는 流動性 衝擊 安全裝置 制度化 —・成熟債權國 段階 ㅇ對內自由化條件 —・價格機構에 依한 資源配分效率化 定着 ・物價安定으로 因한 金利의 國際水準 維持 ・換率變動의 安定性 維持 —・金融產業 國際化 達成 ・國內에 國際外換市場 形成 ・先物換市場 發達 —・工業構造 高度化 擴大 ・比較優位 技術集約產業定着	—・例外的인 品目을 除外한 全般的인 輸入自由化 實現 —・外換集中制, 指定通貨制 廢止 —・貿易外 去來의 原則的 自由化 —・民間의 海外有價證券 및 不動產投資의 制限的 許容 —・經濟協力型 海外投資의 本格 推進 —・後開發國에 대한 一般特專關稅制(GSP)供與

性이 明白히 보여야 한다(未成熟成長債務國에서 成熟債務國으로의 轉換段階).

한편 對內自由化 條件面에서도 價格機構 活性化 基盤이 造成되어야 한다. 自由化의 成敗는 結局은 自由競爭을 基本原理로 生產性을 提高하여 國際競爭力이 있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는데 이와같은 國際競爭力은 政府의 一方的인 特惠, 支援에 依해서 보다 國內產業間의 技術革新이나 經營合理化등 끊임없는 競爭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競爭力提高의 基礎가 되는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가능케 하기 爲해서는 金利・換率 등 價格機能이 正常的으로 움직일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이 造成되어야 한다.

또한 實物經濟發展을 뒷받침할 수 있는 金融產業도 實物經濟成長과 併行하여 發展 및 育成될 것이 必要하다. 이 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은 關稅保護下에 自由化品目을 選別的으로 擴大하고 輸入自由化 展開方向도 종래의 直接自由化(禁止・制限→自動承認)에서 間接自由化(禁止・制限→監視→自動承認) 形態를 取함으로써 自由化의 漸進性 및 彈力性을 賦與한다. 또한 貿易外支給의 部分的 自由化와 外換集中制를 漸進的으로 緩和하는 措置를 실시하고 金融機關이나 大企業이 債券發行등을 通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本調達을 擴大한다(圖 2 參照).

나. 自由化 實現段階

前段階에서 試驗的으로 推進하던 自由化의 範圍를 擴大하여 실현하는 段階로서 對外去來

規模가 世界去來의 總規模에서 占하는 比重이 커지고 對外均衡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기 直前의 狀態이기 때문에 開放化의 外部壓力이 漸增할 것에 대비하는, 다시말하면 OECD加入을 受諾할 수 있는 基盤構築時期로 成熟債務國段階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의 自由化條件은 먼저 國際收支條件에 있어서 經常收支가 黑字로 轉換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經常收支 赤字幅이 經常GNP의 5%以內로 對外均衡이 接近되고, 輸出構造도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爲主에서 資本 내지 技術集約的 重化學工業製品이 中心이 되도록(例 60%以上수준) 轉換된다. 對內自由化도 相當히 進前되어 國內金利가 國際金利水準에 접근하고 物價도 安定水準에 있어 換率變動이 安定되는 등 換率機能도 活性化되게 된다. 또 金融市場의 專門化·分業化는 크게 進前되어 金融資產이 多樣化되고 內資動員 極大化를 위한 體制가 정비된다. 따라서 短期資金市場과 資本市場등 第2金融圈이 크게 發達하여 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投資가 許容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된다.

第2段階에서의 自由化戰略을 例示하면 輸入限度制를 廢止하여 輸入自由化率도 90% 以上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產業構造 高度化를 爲한 技術導入을 完全 開放하는 措置가 필요하다. 따라서 外國人의 直接投資를 적극 誘致하기 爲한 外換管理法·外資導入法上의 規制를 大幅 緩和하는 關係法規의 改定·整備가 필요하다. 이 期間에는 적어도 GATT協定 第11條, IMF協定 第8條 및 OECD自由化 規約을 受諾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하거나 또는 비록 義務條項을 留保하더라도 積極的으로 OECD에 加入하는 措置가 要請된다.

다. 自由化 活着段階

이 경우에는 經濟의 對內·對外均衡이 달성되고 經濟政策運用도 創意와 能率이 尊重되는 民間主導에 依한 市場經濟原理의 適用이 擴大된다. 또한 自由化試驗段階를 거쳐 國際競爭力이 어느 程度 優位를 確保하게 되어 積極的 開放化추진에 自信이 생긴 結果 資本去來의 自由化도 流入뿐만 아니라 流出面이 동시에 强調되는 이른바 新債權國(new creditor nation) 段階이다.

第3段階에 對應되는 自由化條件을 살펴보면 國際收支事情에 있어서도 經常收支 黑字가 계속되는 등 對外均衡基調가 定着化되어야 한다. 對內自由化 與件도 開放化로 因한 外部衝擊에 견딜 수 있을 만큼 價格機能 등 市場經濟機能의 自律性이 活着되어 명실공히 對內·對外均衡이 달성될 수 있는 與件이 조성된다.

따라서 이 段階에서 展開되는 自由化戰略은 먼저 政府의 經濟政策上 保護 및 育成이 필요한 產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制限品目을 監視品目(半自動承認品目)으로 轉換해야한다. 關稅도 점진적으로 引下되고 輸出支援金融에 있어서도 短期輸出支援金融을 점차 廢止하고 延拂輸出中心의 長期輸出支援金融으로 轉換되어 政策金融支援을 크게 줄인다. 또한 外國換需給計劃을 廢止하는 등 강력한 外換集中制와 外換規制를 緩和하고 先物換去來 및 其他 補完措置를 확대하여야 한다. 資本去來에서는 國內 證券市場에서의 外國人投資範圍를 擴大하는 한편 資本流出面의 自由化도 강화된다.

라. 自由化 完成段階

이 段階에서는 物價安定으로 對內均衡이 定

着化되고 經常收支 黑字幅이 累增되는 결과 海外部門에서 惹起되는 流動性增加가 國內經濟安定을 攪亂시키는 衝擊을 最小化하도록 經濟의 開放化가 철저히 추진되어 對外去來自由化도 完成되는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이 段階에서는 國民所得 向上에 따라 輸出伸張에 비해 相對的으로 輸入需要가 크게 늘어나는 成熟債權國(mature creditor nation)에 進入하게 된다.

自由化 完成段階에서 要求되는 自由化條件은 經常收支 黑字가 累增될 뿐만 아니라 이로 因한 流動性을 적절히 吸收하여 調整할 수 있는 政策手段을 具備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對內的으로 價格機構에 의한 資源配分效率化가 극대화되고 國內金利도 物價安定으로 因해 國際水準에 일치하고 換率變動의 安定性을 維持해야 한다. 또한 金融市場의 國際化도 實現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國內에 國際外換市場이 形成되고 先物市場이 發達하게 된다.

自由化의 마지막 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은 우선 輸入自由化의 側面에서는 例外的인 品目을 제외하고 全般的인 輸入自由化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外換集中制와 指定通貨制는 廢止하여 貿易外去來는 原則的으로 自由化시킨다. 또한 民間의 海外 有價證券이나 不動產에 대한 投資도 制限的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經濟協力型 海外投資를 本格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開發途上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GSP)도 供與하면서 GATT 第11條, IMF 第8條國으로 移行, OECD에 定式으로 加入하여 經濟去來의 自由化를 完成하게 된다.

Ⅳ. 韓國의 對外去來 自由化政策

1. 自由化 戰略

先進諸國의 對外去來 自由化推進過程을 보면 먼저 貿易自由化를 추진하고 다음 外換自由化를 實現한 後 資本自由化를 展開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國際收支事情 및 對內自由化條件 등의 制約要因때문에 段階別自由化를 推進하기 爲해 必要한 先行要件을 充足한 後에 그에 대응되는 自由化를 展開하고 自由化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補完措置를 마련하는 式의 「先條件充足 後自由化」의 漸進的·補完的 接近方法을 取한데 反하여 西獨은 「先自由化 後條件充足」패턴의 積極的인 自由化戰略을 使用하였다. 물론 西獨의 經濟는 基本的으로 工業構造高度化나 高生產性 등 經濟構造의 基盤이 日本에 비해 공고하였고 그 當時 新自由主義理念에 立脚하여 經濟政策을 樹立하였기 때문이긴 하지만 積極戰法으로 成功하였다. 이에 比해 우리의 경우는 經濟構造基盤이나 經濟運用慣行등이 先進國보다 훨씬 落後되어 있어 國際競爭力面에서 脆弱하기 때문에 積極的으로 自由化를 추진하면 國際收支不安, 國內市場攪亂 등 國內經濟의 安定을 害칠 危險性이 많다. 그러나 消極的으로 自由化先行條件이 전부 充足된 後에만 自由化를 推進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現國內外 經濟與件과 第5共和國의 指導的 政治理念인 開放化·自由化政策에 비추어 볼 때 急變하는 國際經濟에 能動的·伸縮的으로 適

應하여 第2의 經濟跳躍을 圖謀하려는 새시대 經濟理念에도 어긋나고 또 5次經濟開發計劃上 每年 100億弗以上 必要한 外資調達에도 蹉跌을 招來하게 된다. 勿論 資本自由化등 對外去來自由化는 意慾과 意志만으로 成就되는 것은 아니고 國內經濟의 成熟과 함께 國際環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政府가 開放經濟指向을 先導함과 더불어 企業·勤勞者·家計 등 모든 經濟主體의 自由化에의 努力이 끊임없이 傾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自由化基本戰略은 國際經濟環境에 伸縮的으로 對應하면서 自由化를 추진하되 우리經濟의 與件을 勘案하여 段階的으로, 그러나 先行條件造成과 補完措置를 併行하여 實施한다는 折衷的인 立場을 取해야 할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海外의 自由化壓力과 保護障壁에 對處하는 方案으로써 輸入自由化政策에 있어서 臺灣의 경우처럼 名目的인 自由化比率은 가능한 限 높이되 關稅率의 調整등으로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이 成熟될 때까지 實質自由化를 漸進的으로 추진하고 外換 및 資本自由化에 對해서는 長期自由化計劃을 樹立·宣言함으로써 國內企業으로 하여금 그에 對한 事前準備 내지 對應能力을 키우게 하는 한편 5次經濟開發計劃上 每年 100億弗 以上 필요한 外資調達을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外資導入의 窓口와 手段을 多樣化하면서, 또 金利·換率등 市場價格機能의 自律性을 제고하는 등 對內自由化 條件充足도 적극 併行·推進하면서 資本流入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制約을 果敢히 自由化할 必要가 있다.

2. 自由化 現況

현재 自由化에 關係되는 法規로는 貿易管理에 關해서는 貿易去來法, 外國換管理法, 關稅法 등이 있고 資本自由化에 關하여는 外資導入法, 外國換管理法 및 證券去來法 등이 있다[20].

지금까지 發表된 政府의 主要 自由化計劃의 基本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21].

◎輸入自由化基本方向

- 輸入自由化의 段階的 推進과 輸入豫示制의 活用으로 國內產業에 對한 충격을 最小化
- 非競爭輸入品目은 輸入自由化와 關稅引下를 併行
- 國內產業政策, 物價政策, 기타 關聯되는 政府施策과 連繫하여 相互補完的인 機能을 강화
- 競爭輸入品目(特히 資本材)은 段階的으로 自由化하되 必要時 關稅로 補完하여 81年 현재 74.7%의 輸入自由化率을 5次5個年末年에는 90% 以上으로 높임

◎資本自由化基本方向

特記할 만한 것은 최근 政府가 發表한 證券自由化計劃인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第1段階(84年까지) : 受容態勢整備段階
  - —國際投資信託의 制限的 許容
  - —外國證券會社의 國內事務所 設置許可
  - —證券關係機關의 人力養成 등 證券市場開放을 爲한 基礎整備
- 第2段階(85年頃) : 外國人의 直接投資 制限的 許容

20) 自由化內容에 따라 所管部處가 달라 政策의 樹立 및 實施에 統一性과 一貫性을 維持하기 困難한 制度上의 缺陷이 있음.

21) 輸入自由化計劃에 關해서는 78年 2.16 輸入自由化對策委員會의 發表 및 81年5.13 5次經濟開發計劃(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資本自由化에 關해서는 81年 1.14 財務部의 證券自由化計劃에 基本內容이 들어있음.

〔圖 3〕 主要自由化措置 內容

		自 由 化 措 置
貿易	1967年	GATT 加入, 貿易計劃體制改編(Positive→Negative)
	1971年	輸入期別公告上 商品分類 基準을 SITC에서 BTN으로 變更함으로써 보다 國際的으로 共通的인 制度를 活用하게 됨.
	1978年 2月	輸入自由化對策委員會 發足
	1978年 5月～1979年 1月	輸入自由化 基本方向 設定 第1次～3次 輸入自由化 實施
	1979年 下半期	改編된 CCCN體制에 맞추어 輸出入 期別公告를 改編
	1981年 5月26日	第4次 輸入自由化 實施, 改編된 CCCN 8單位體制에 맞추어 輸出入期別公告를 改編
外換 및 資本	1955年 8月	IMF, IBRD 加入
	1960年 1月	外資導入促進法 制定 外國換管理法 發效)—對外資本去來에 關한 基本法 制定
	1962年 7月	借款에 대한 支拂保證에 관한 法律(支拂保證法) 發效→外國人投資 및 商業借款의 法的 根據 確立
	1962年 10月	大韓石油公社 設立(Gulf와 合作)
	1965年 3月	IMF로부터 外換市場操作 安全基金으로 9,300萬弗의 Stand-by Credit 確保—最初의 國際金融機構借款契約
	1966年 8月	外資導入關係法令 統合, 外資導入에 대한 各種 稅制惠澤과 元利金送金保障
	1967年 5月	湖南精油 設立(Caltex와 合作)
	1967年 7月	外國銀行으로서는 처음으로 美國「체이스맨해턴」國內進出
	1970年 1月	"外貨國債의 發行에 關한 法律" 制定—우리나라 政府의 海外起債가 可能케 됨.
	1972年 10月	外銀支店의 對韓銀 還買條件附 外貨資金賣却(SWAP) 範圍 擴大—輸出金融에 限하던 것을 一般貸出財源 調達에도 許容
	1974年 10月	産業銀行이 우리나라 最初의 外貨債券 發行(Abu Dhabi 政府引受, 1,900萬弗)
	1978年 4月	1次技術導入 自由化—機械, 造船, 金屬, 電氣機器 등 部門의 一部 技術導入自由化
	1979年 1月	金融機關「리화이넌스」調達金利 自律化
	4月	借款金額 下限線 廢止, 第2次 技術導入 自由化—原子力 및 防衛産業을 除外한 全産業으로 擴大
	9月	韓國證券去來所, 國際證券去來所聯盟 加入
	1980年 1月	外資導入法 施行令 改定, 外資導入 事前申告對象金額을 引上 (借款 : 300萬弗以上→1,000萬弗以上) (外國人投資 : 100萬弗以上→200萬弗以上)
	5月	外資導入認可節次 簡素化 ○外資事業投資審議委員會의 議決限度 引上(100萬弗→1,000萬弗) ○外資導入 事前申告對象金額 引上(300萬弗以上→1,000萬弗以上)
	9月	外國人投資誘致擴大方案 發表 ○外國人投資適格事業의 範圍擴大 : 食品, 醫藥品, 流通 및 「서어비스」産業 등을 追加 ○元本回收에 대한 規制 廢止 ○外國人投資規模의 最低限度 引下(件當 50萬弗→10萬弗) ○外國人投資比率引上 : 輸出自由地域入住事業, 先進技術을 수반하는 事業 등 일부 事業에 대해서는 100%까지 投資를 許容
	1981年 1月	證券市場自由化推進計劃 發表
	7月	外國換去來節次의 簡素化등을 위한 外換管理規定 改定, 外國人 投資業種 擴大

- 第3段階(80年代 後半) : 外國人의 本格的 投資許容 및 國內證券의 海外發行
- 第4段階(90年代 前半) : 完全自由化로 資本流出을 許容

3. 段階別 實施方案과 補完措置

가. 現段階에서 추진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

위의 4段階 自由化接近模型中에서 현재의 韓國 經濟狀況은 第1段階에 해당하고 내년부터 始作되는 第5次 5個年經濟開發計劃 期間中은 1段階 내지 2段階에 相應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經濟의 現段階를 自由化模型條件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먼저 國際收支條件에서 비록 經常收支가 今年을 포함해서 第5次計劃期間中에 계속 赤字를 示顯할 것이 예상되지만 赤字幅이 縮小[22]되는 추세에 있고 外債償還負擔率도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外換保有高도 상당 水準에 있어 국제수지 방어능력이 있다고 判斷되며(表 12 한국경제의 長期展望 參照) 한편 對內自由化條件에 있어서도 必要條件이 전부 충족되어있지 않고는 있지만 政府가 最近 金利·換率 등 價格機構를 市場經濟原理에 依하여 流動시킴으로써 價格機能을 活性化하고, 한편 落後된 金融產業을 實物經濟成長과 같은 수준으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民營化와 國際化를 段階的으로 試圖하는 등 自由化前提條件 基盤을 構築하는 데 政策的 努力을 集中하고 있는 現今의 經濟狀況과 政策意志에 비추어 判斷할 때, 自由化接近模型의 段階別로 要求되는 必要補完對策을 自由化 推進과 함께 講究한다면 自由化 1段階 및 2段階의 自由化戰略 展開가 可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自由化措置를 생각할 수 있겠다.

1) 長期 自由化計劃의 樹立·發表
- 現行 輸入自由化對策委員會를 吸收하는 專門家로 構成된 自由化對策委員會를 組織
- 우리가 段階的으로 추진할 自由化戰略 內容에 關한 一貫性있는 長期 自由化計劃大綱(MASTER PLAN)을 樹立·發表하여 經濟活動 主體가 對應措置를 事前準備할 수 있게 함
- 現在 所管部處(經濟企劃院, 財務部, 商工部)別로 自由化措置를 發表하여 생기는 混線을 防止함

2) 輸入自由化品目의 擴大와 輸入制限要因 除去 : 例컨데 輸入推薦制度 및 實需要者制度 등을 段階的으로 除去함

3) 輸出支援制度의 再整備
- 支援對象을 漸次 國際競爭力上 比較優位를 占할 수 있는 產業分野로 縮小
- 中長期 延拂輸出支援을 擴大

4) 貿易外 支給制限의 緩和
- 小額의 送金 및 技術用役契約의 自由化
- 件別 支給認證에서 包括的 支給認證으로 轉換

5) 國際金融市場에서의 直接借入 擴大
- 現段階에서는 우리나라 企業의 信用度나 海外金融技法 등을 고려할 때 1次的으로

22) 經常收支赤字의 對GNP比重이 81年 8.4%, 86年 2.7%임(表 12 參照).

金融機關이 借入하여 企業에 轉貸하고 2次的으로는 浦鐵, 韓電 등의 政府投資機關이, 그 다음으로 資本金 300億원 以上의 大企業順으로 接近하도록 함

· 補完措置로써 金融機關의 國際業務의 多樣化와 金融仲介機能을 提高토록 함

6) 資本市場 國際化를 위한 受容態勞整備

· 證券會社의 大型化·國際化를 推進

· 國際標準의 企業의 公示制度를 改善·整備가 필요함.

나. 次順位(5次經濟計劃期間中)로 檢討해야할 自由化戰略

○輸入自由化

1) 國內產業 保護 및 國內經濟秩序 維持上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의 制限品目을 監視品目(準自動品目)으로 轉換

· 예를들면 生必品 및 其他 消費財中 內外價格差가 顯著한 品目은 企業의 過剩保護를 止揚하고 消費者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 監視品目으로 轉換

2) 一定한 適應期間이 지난 監視品目은 自動承認品目으로 轉換(輸入自由化率 90% 以上達成)

· 監視品目 轉換 2~3年內에 輸入이 크게 增加하지 않은 品目

· 監視品目으로 轉換直後 輸入이 크게 늘었으나 곧 自由化前의 輸入增加率 水準으로 回復된 品目

3) 輸入自由化體制에 附合한 制度改善 및 補完對策

· 關稅 및 輸入擔保金 積立率의 引下와 諸般行政規制 撤廢

· 監視品目은 전부 彈力關稅 對象品目에 包含시키는 등 彈力關稅 對象品目을 大幅擴大

· 國別 貿易不均衡의 深化程度와 各國의 對韓輸入規制狀況을 參酌하여 輸入開放의 部分的인 國別 差等措置

○外換自由化

1) 外換集中制의 大幅緩和와 先物換市場의 育成·發展

· 商社의 外換保有制 擴大

· 業務用 海外旅行 經費制限 撤廢

○資本自由化

1) 外國人의 國內證券投資의 制限的 許容

· 投資方法은 國際投資信託會社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이나 Korea Fund 등의 間接的인 投資方法으로 一元化할 것.

2) 外國人 直接投資 規制緩和

— 經濟企劃院의 許可를 받게되어 있는 外國人의 直接投資에 關하여 부분적으로 自動認可對象事業 設定(日本의 1次 直接投資 自由化時〈1967年〉 50個業種을 自由化)

· 高度技術과 大規模 資本所要 部門

· 「에너지」代替部門

· 海外原資材 確保產業

· 國內產業中 國際競爭力이 높은 部門 등의 產業中에서 自動認可對象 設定

— 長期間 果實送金을 하지 않는 條件의 경우에는 높은 外國人의 持株比率을 認定(現在 外國人의 持株率을 50% 以上 100%까지 許容할 수 있는 事業은 81年 7月, 1段

階로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10個産業 427個業種에 대해서 대폭 許容함)

○補完措置

1) 外國人의 投資範圍 制限

· 資本自由化 初期段階에서는 自由化對象을 列擧하는 Positive System을 取하고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培養의 進展에 따라 그 範圍를 擴大하고, 80年代末에 가서는 모든 業種을 Negative System體制로 轉換

· 戰略産業, 金融産業 및 1次産業은 自由化對象에서 제외

· 特定産業에서의 偏重投資를 防止하기 위해 産業別 外國人持株比率의 上限을 規定할 것

2) 投資元金 回收에 段階的 制限

· 國際收支 및 資本市場의 混亂을 防止하기 위하여 元金回收는 一年 以上 居置期間과 長期分割回收하는 것을 原則으로 할 것

3) 收益送金의 上限線 設定

· 國內物價上昇率, 國際金利 및 其他 所得을 감안한 年中送金 可能한 收益率 上限線을 規定하고, 이를 超過하는 果實送金에 대하여는 重課稅 與否를 伸縮的으로 調整할 것.

4) 換Risk의 防止를 위해서 先物換市場을 育成·發展시키는 것을 前提로 外國人의 國內投資의 元金評價를 「원」貨表示로 하여 換Risk는 外國人投資家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

5) 外國人 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하기 爲한 外換管理法, 外資導入法 등 關係法規 整備

다. 90年代에 檢討할 수 있는 自由化戰略

우리나라 經濟의 長期展望을 보면 90年代初까지 經常收支 黑字를 實現하지 못하고 經常收支 均衡에 接近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결국 世界經濟 내지 우리 經濟與件이 變化하는 데 따라 우리의 自由化戰略도 이에 對應하여 伸縮的으로 추진되겠지만 換率, 金利 등 價格機能이 活性化되어 國際水準에 接近되고 金融市場이 先進國水準으로 發達되는 등 對內 自由化 條件이 相當水準까지 充足되고 對外的으로는 韓國經濟에 대한 對外信認度가 크게 向上되는 등 經濟與件이 우리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80年代末부터 90年代에 自由化接近模型의 3段階 내지 4段階의 自由化戰略을 展開할 수 있다.

○輸入自由化

1) 例外的인 品目을 제외한 全般的인 輸入自由化 實現

· 戰略的인 保護 및 育成分野와 安保上 制限品目과 國際協定上 制限이 必要한 경우 自由化를 留保하되

· 纖維, 原資材 및 施設材는 原則的으로 全面自由化

· 生必品 및 其他 消費財는 順次的으로 전부 自由化

2) 輸出去來 交涉品目目錄 事前準備

· 地域別로 輸出 Bargain品目 目錄을 作成準備

· 相對交易國의 우리나라 主要品目에 대한 輸入規制緩和가 없는 경우, 自由化를 留保

3) 後發開途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 供與

· 後發開途國과의 通商 및 經協增進과 輸入市場의 多邊化 및 輸出市場 開拓을 위하여 後發開途國에 대한 一般特惠關稅 供與檢討

4) 輸出支援制度 및 輸入擔保金制度 廢止

· 短期輸出金融支援은 廢止하고 設備支援金融對象은 縮小

· 技術과 情報 支援擴大에 重點

○外換自由化

· 外國換需給計劃 廢止

· 資本自由化의 원활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外換規制 除去

· 海外旅行經費制限 廢止등 貿易外支給을 原則的으로 自由化

· 外換集中制 指定通貨制 廢止

○資本自由化

1) 非居住者의 國內直接投資 漸進的 自由化推進

· 自動認可 對象業種을 擴大

· 非居住者 持株比率 制限의 緩和

2) 非居住者의 國內證券去來 許容

· 取得對象 및 限度 擴大

3) 外國保險會社의 國內保險業務 許容

4) OECD加入, IMF 8條國으로 移行하여 外換 및 資本自由化 義務 受諾

5) 居住者의 海外證券投資 및 國內證券會社의 海外進出幅 擴大

6) 外國證券의 國內發行上場

7) 經濟協力型 對外投資의 積極推進

結論的으로 말하면 先進 自由資本主義國家들은 經濟의 開放化·自由化를 通하여 相互間의 貿易擴大와 資本의 效率的인 配分으로 高度의 經濟成長과 經濟繁榮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나 昨今의 世界經濟 및 交易現實은 自國의 輸出增大를 爲해 自由化를 주장하면서도, 한편 自國의 產業保護를 爲해 保護主義 障壁을 높이 쌓고 있는 결과 現代의 對外去來自由化는 國益에 따라 變하는 二律背反性으로 因하여 傳統的 意味의 自由化에는 限界가 있게 된다.

그러나 世界經濟가 自由開放經濟體制에 그 存立基盤을 두고 있는 限「自由化·國際化」의 추진은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世界經濟의 均衡된 發展을 爲해서 꼭 필요한 前提條件이며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으로서도 先進經濟圈에 進入하기 爲해 반드시 거쳐야 할 必然的인 過程이다. 다만 自由化를 爲해 經濟的 先行與件이 成熟되지 않은 상태에서 對外去來의 적극적인 自由化추진은 世界貿易構造의 變動推移와 동떨어진 國內產業構造의 定着化와 國際收支 惡化를 招來하여 오히려 經濟發展이 沮害될 염려도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따라서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弱肉强食의 貿易戰爭에서 生存하기 爲해서 能動的이고 伸縮的인 開放政策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포함한 產業內部의 合理化를 圖謀하기 爲하여는 成長期待部門에 대한 支援施策 및 斜陽產業에 대한 轉換對策과 企業體質强化 對策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產業政策의 定立이 必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財政·金融·外換政策의 補完對策의 마련과 特히 綜合的인 自由化 MASTER PLAN을 樹立함으로서 現在 所管部處別로 自由化措

置를 實施하여 統一性과 一貫性을 缺如하고 있는 自由化政策을 再整備하는 것이 開放經濟體制의 追求와 관련해서 우리가 時急히 해결해야 할 當面調題라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國際經濟硏究院, 『經濟基調轉期의 政策對應』, 1980.

司空壹, 「金融과 經濟發展」, 『韓國開發硏究』, 1980. 9.

徐錫泰, 『日本 및 西歌의 輸入自由化過程과 補完對策』, 1978.

嚴永錫, 「資本主義의 問題點」, 韓國經濟新聞, 1981. 2. 11.

韓國銀行, 「貿易自由化와 產業政策의 方向」, 『調査月報』, 1977. 12.

_____, 「日本의 貿易 및 外換自由化推進」, 『海外調査資料』, 1978.

經濟企劃廳調査局編, 『經濟白書 25年』, 日本經濟新聞社, 1975.

吉村正晴, 『自由化와 日本經濟』, 岩波新書, 1964.

澄田・知小宮隆太郎・渡邊康編, 『多國籍企業의 實態』, 日本經濟新聞社, 1972.

神野正雄編, 『資本自由化와 國際競爭力』, 1966.

綜合政策硏究會, 『資本自由化의 本質과 對策』, 1967.

河合俊三, 『OECD의 話』, 日本經濟新聞社, 1976, 1977.

Aliber, Robert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Balassa, Bella, *Trade Liber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Objectives and Alternatives,* McGrow-Hill Co., 1967.

Balassa, Bela, Mordechai E. Krenin,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Kennedy Round," *The Static Effec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7.

Reuber, Grant L.,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73.

Gruber W. Mehta O. Vernon R. "The R&D Factor in Inter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Feb. 1967.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60.

Kindleberger, C.P.,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 on Direct Investment,* Yale Univ. Press, 1969.

Kindleberger, C.P. (ed.), A Symposium,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march 1973.

_____,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June 1978.

Gold Smith, Raymond W., *The Determinents of Financial Structure,* Paris; OECD, 1966.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